

안전보호구 사용 및 관리기준 개정(안) 전·후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 (용어의 정의)</p> <p>2. “안전보호구 관리부서”라 함은 본사 및 사업소에서 안전보호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.</p>	<p>제5조 (안전보호구 지급)</p> <p>2. “안전보호구 담당부서”라 함은 본사 및 사업소에서 제3조에서 정한 안전보호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, 지급과 관리부서의 업무 구분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는 [별표1]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지급과 관리부서 역무 명확화</p> <p>○ 본문의 관리부서와 [별표1]의 지급/관리 부서 혼선방지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(별표 1) 안전보호구 지급 기준</p> <p>1. 사업소 근무자 작업용 안전보호구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정기 지급 보호구 (KCs¹⁾ 인증)</p> <p>○ 개인 보호구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38 826 920 1174"> <thead> <tr> <th>순서</th> <th>품목</th> <th>적용 대상</th> <th>지급주기</th> <th>지급수량</th> <th>예비수량</th> <th>관리부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1</td> <td rowspan="3">안전모*</td> <td>흰색 전 직원</td> <td>2년</td> <td>1개/인</td> <td>현원의 10%</td> <td>안전부서</td> </tr> <tr> <td>노란색 신입직원</td> <td>연수 기간내</td> <td>1개/인</td> <td>-</td> <td>“</td> </tr> <tr> <td>빨간색 안전부서</td> <td>2년</td> <td>1개/인</td> <td>현원의 10%</td> <td>“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2</td> <td rowspan="2">안전화</td> <td>사무직원</td> <td>3년</td> <td>1켤레/인</td> <td rowspan="2">현원의 20%</td> <td rowspan="2">“</td> </tr> <tr> <td>현장직원</td> <td>2년</td> <td>1켤레/인</td> </tr> <tr> <td>3</td> <td>귀덮개</td> <td>현장직원</td> <td>2년</td> <td>1개/인</td> <td>“</td> <td>“</td> </tr> <tr> <td>4</td> <td>특급 방진마스크</td> <td>석탄취급 등</td> <td>(직경)1주/(여과)2일</td> <td>1개/인</td> <td>지급수량의 10%</td> <td>“</td> </tr> <tr> <td>5</td> <td>1급 방진마스크</td> <td>전직원</td> <td>(여과) 2일</td> <td>1개/인</td> <td>지급수량의 10%</td> <td>“</td> </tr> <tr> <td>6</td> <td>안전조끼</td> <td>현장직원</td> <td>1회/년</td> <td>1개/인</td> <td>지급수량의 10%</td> <td>“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안전모 기준은 [별표5] 전사 안전보호구 기준 참조</p>	순서	품목	적용 대상	지급주기	지급수량	예비수량	관리부서	1	안전모*	흰색 전 직원	2년	1개/인	현원의 10%	안전부서	노란색 신입직원	연수 기간내	1개/인	-	“	빨간색 안전부서	2년	1개/인	현원의 10%	“	2	안전화	사무직원	3년	1켤레/인	현원의 20%	“	현장직원	2년	1켤레/인	3	귀덮개	현장직원	2년	1개/인	“	“	4	특급 방진마스크	석탄취급 등	(직경)1주/(여과)2일	1개/인	지급수량의 10%	“	5	1급 방진마스크	전직원	(여과) 2일	1개/인	지급수량의 10%	“	6	안전조끼	현장직원	1회/년	1개/인	지급수량의 10%	“	<p>(별표 1) 안전보호구 지급 기준</p> <p>1. 사업소 근무자 작업용 안전보호구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정기 지급 보호구 (KCs 인증제품)</p> <p>○ 법정 보호구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87 842 1787 1158"> <thead> <tr> <th>순서</th> <th>품목</th> <th>적용대상</th> <th>지급주기</th> <th>지급수량</th> <th>예비수량</th> <th>담당부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1</td> <td rowspan="3">안전모</td> <td>흰색 전 직원</td> <td>2년</td> <td>1개/인</td> <td>현원의 10%</td> <td>안전부서</td> </tr> <tr> <td>노란색 신입직원</td> <td>연수 기간내</td> <td>1개/인</td> <td>-</td> <td>안전부서</td> </tr> <tr> <td>빨간색 안전부서</td> <td>2년</td> <td>1개/인</td> <td>현원의 10%</td> <td>안전부서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2</td> <td rowspan="2">안전화*</td> <td>사무직원¹⁾</td> <td>3년</td> <td>1켤레/인</td> <td rowspan="2">현원의 20%</td> <td rowspan="2">안전부서</td> </tr> <tr> <td>현장직원²⁾</td> <td>1년</td> <td>1켤레/인</td> </tr> <tr> <td>3</td> <td>특급 방진마스크</td> <td>석탄취급 등</td> <td>(직경)1주/(여과)2일</td> <td>1개/인</td> <td>지급수량의 10%</td> <td>안전부서</td> </tr> <tr> <td>4</td> <td>1급 방진마스크</td> <td>전 직원</td> <td>(여과) 2일</td> <td>1개/인</td> <td>지급수량의 10%</td> <td>안전부서</td> </tr> <tr> <td>5</td> <td>안전조끼**</td> <td>현장직원</td> <td>1회/년</td> <td>1개/인**</td> <td>지급수량의 10%</td> <td>안전부서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석탄취급설비(하동, 삼척) 담당부서 직원은 필요 시 기간 내에 1켤레 추가 지급 가능 ** 신입직원은 안전조끼 최초 지급 시 인당 2개 지급</p>	순서	품목	적용대상	지급주기	지급수량	예비수량	담당부서	1	안전모	흰색 전 직원	2년	1개/인	현원의 10%	안전부서	노란색 신입직원	연수 기간내	1개/인	-	안전부서	빨간색 안전부서	2년	1개/인	현원의 10%	안전부서	2	안전화*	사무직원 ¹⁾	3년	1켤레/인	현원의 20%	안전부서	현장직원 ²⁾	1년	1켤레/인	3	특급 방진마스크	석탄취급 등	(직경)1주/(여과)2일	1개/인	지급수량의 10%	안전부서	4	1급 방진마스크	전 직원	(여과) 2일	1개/인	지급수량의 10%	안전부서	5	안전조끼**	현장직원	1회/년	1개/인**	지급수량의 10%	안전부서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귀덮개 지급주기 변경</p> <p>○ 2년 → 필요수량(수시)*</p> <p>* 상세내용은 ‘개정안 대비표’ 2Page 참조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장직원 안전화 지급주기 변경</p> <p>○ 2년 → 1년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신입직원 안전조끼 최초 지급수량 확대</p> <p>○ 1개/인 → 2개/인</p>
순서	품목	적용 대상	지급주기	지급수량	예비수량	관리부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안전모*	흰색 전 직원	2년	1개/인	현원의 10%	안전부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노란색 신입직원	연수 기간내	1개/인	-	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빨간색 안전부서	2년	1개/인	현원의 10%	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안전화	사무직원	3년	1켤레/인	현원의 20%	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현장직원	2년	1켤레/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	귀덮개	현장직원	2년	1개/인	“	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	특급 방진마스크	석탄취급 등	(직경)1주/(여과)2일	1개/인	지급수량의 10%	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	1급 방진마스크	전직원	(여과) 2일	1개/인	지급수량의 10%	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	안전조끼	현장직원	1회/년	1개/인	지급수량의 10%	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순서	품목	적용대상	지급주기	지급수량	예비수량	담당부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안전모	흰색 전 직원	2년	1개/인	현원의 10%	안전부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노란색 신입직원	연수 기간내	1개/인	-	안전부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빨간색 안전부서	2년	1개/인	현원의 10%	안전부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안전화*	사무직원 ¹⁾	3년	1켤레/인	현원의 20%	안전부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현장직원 ²⁾	1년	1켤레/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	특급 방진마스크	석탄취급 등	(직경)1주/(여과)2일	1개/인	지급수량의 10%	안전부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	1급 방진마스크	전 직원	(여과) 2일	1개/인	지급수량의 10%	안전부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	안전조끼**	현장직원	1회/년	1개/인**	지급수량의 10%	안전부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□ 수시 지급 보호구 (KCs 인증)

○ 법정 보호구

순서	품목	지급수량	예비수량	관리부서	
				지급	관리
1	귀마개	상시 비치, 필요 시 사용	지급수량의 20%	안전	운영
2	보안경	(교대) 1조 인원수/(기술) 과당 2개	지급수량 10%	안전	운영
3	절연용 안전장갑	필요수량	지급수량 + 1 Set	안전	운영
4	절연장화	필요수량	지급수량의 10%	안전	운영
5	화학물질용 안전장갑	유독물취급자 : 1개/인	지급수량의 10%	운영부서	
6	방독마스크 및 정화통	유독물취급자 : 1개/인	지급수량의 10%	운영부서	
7	화학물질용 보호복	유독물취급자 : 1개/인	지급수량 + 1 Set	운영부서	
8	화학물질용 안전장화	유독물취급자 : 1개/인	지급수량의 10%	운영부서	
9	방열복	유독물취급자 : 1개/인	지급수량의 10%	안전	운영
10	안전대 (로프포함)	기술부서 : 1개/인	지급수량 10%	안전	운영

□ 수시 지급 보호구 (KCs 인증제품)

○ 법정 보호구

순서	품목	지급수량	예비수량	담당부서	
				지급	관리
1	귀마개	상시 비치, 필요 시 사용	지급수량의 20%	안전부서	운영부서 ³⁾
2	귀덮개	필요수량	지급수량 + 1Set	안전부서	운영부서
3	보안경	필요수량	지급수량 10%	안전부서	운영부서
4	절연용 안전장갑	필요수량	지급수량 + 1 Set	안전부서	운영부서
5	절연장화	필요수량	지급수량의 10%	안전부서	운영부서
6	화학물질용 안전장갑	유해화학물질취급자 : 1개/인	지급수량의 10%	운영부서	
7	방독마스크 및 정화통	유해화학물질취급자 : 1개/인	지급수량의 10%	운영부서	
8	화학물질용 보호복	유해화학물질취급자 : 1개/인	지급수량 + 1 Set	운영부서	
9	화학물질용 안전장화	유해화학물질취급자 : 1개/인	지급수량의 10%	운영부서	
10	방열복	필요수량	지급수량 + 1Set	안전부서	운영부서
11	안전대 (로프포함)	기술부서 : 1개/인	지급수량 10%	안전부서	운영부서

- 1) 사무직원 : 생산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
- 2) 현장직원 : 교대 근무, 일근 감독, 설비 및 기타 기기를 감독 관리하는 직원, 생산 현장을 순회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직원(자재관리, 감사부서 포함)
- 3) 운영부서 : 발전운영 또는 환경화학 등 설비 및 부대시설의 건설, 운전 및 유지정비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

□ 사업소별 실정에 맞게 귀덮개와 보안경이 지급되도록 수량 변경

○ 필요수량만 지급

□ 용어 명확화

○ 유독물취급자

→ 유해화학물질취급자

□ 용어 이해를 돕기 위해 각주를 통한 설명 추가

※ 기존에는 [별표1]

마지막 Page에 용어 정의가 기술됨

○ 일반 보호구

순서	품목	지급수량	예비수량	관리부서	
				지급	관리
1	면장갑	(운영) 필요 수량	지급수량 10%	운영	운영
2	자반 및 토시	(운영) 1개/인/년	지급수량 10%	안전	운영
3	일회용 작업복	(운영) 필요 수량	지급수량 10%	운영	운영
4	랜턴	(운영) 1개/인/년	지급수량 10%	안전	운영
5	랜턴 건전지	(운영) 필요 수량	지급수량 20%	운영	운영

○ 일반 보호구

순서	품목	지급수량	예비수량	담당부서	
				지급	관리
1	면장갑	필요수량	지급수량 10%	운영부서	운영부서
2	자반 및 토시	필요수량	지급수량 10%	안전부서	운영부서
3	일회용 작업복	필요수량	지급수량 10%	운영부서	운영부서
4	랜턴	필요수량	지급수량 10%	안전부서	운영부서
5	랜턴 건전지	필요수량	지급수량 20%	운영부서	운영부서

□ 사업소별 실정에 맞게 일반 보호구가 지급되도록 수량 변경

○ 필요수량만 지급

2. 본사 근무자 안전보호구

□ 안전부서 (기술부서 포함)

순서	품목	적용 대상	지급주기	지급수량	예비수량	관리부서
1	안전모	안전부서 또는 기술부서 (요청시)	2년/회	1개/인	현원의 10%	공정안전부
2	안전화		2년/회	1켤레/인	현원의 20%	"
3	귀마개		2년/회	1개/인	"	"
4	특급 방진 마스크		2년/회	1개/인	지급수량의 10%	"
5	1급 방진마스크		2년/회	1개/인	지급수량의 10%	"
6	안전조끼		2년/회	1개/인	지급수량의 10%	"
7	방한복		2년/회	1개/인	지급수량의 10%	"

2. 본사 근무자 안전보호구

□ 안전부서 (기술부서 포함)

순서	품목	적용 대상	지급주기	지급수량	예비수량	담당부서
1	안전모	안전부서 또는 기술부서 (요청시)	2년	1개/인	현원의 10%	안전보건부
2	안전화		2년	1켤레/인	현원의 20%	안전보건부
3	귀마개		2년	1개/인	현원의 20%	안전보건부
4	특급 방진 마스크		2년	1개/인	지급수량의 10%	안전보건부
5	1급 방진마스크		2년	1개/인	지급수량의 10%	안전보건부
6	안전조끼		2년	1개/인	지급수량의 10%	안전보건부
7	방한복		2년	1개/인	지급수량의 10%	안전보건부

□ 현재 기준의 본사 안전보호구 관리 부서명 반영

3. 감염병 대비 보건용 안전보호구

□ 규 격

보건용 마스크	감염병 대비 보건용 안전보호구 (D Set*, 6종)				
					
KF80, 94	D등급 보호복	부츠 커버	보안경	방역용 마스크	안전장갑

* D 등급 Set : 사람의 호흡기나, 분비물의 접촉을 통한 감염예방에 적합 (질병관리청 권고)

3. 감염병 대비 보건용 안전보호구

□ 규 격

감염병 대비 보건용 안전보호구 (D Set*)				
				
D등급 보호복	부츠 커버	보안경	방역용 마스크	안전장갑

* D 등급 Set : 사람의 호흡기나, 분비물의 접촉을 통한 감염예방에 적합 (질병관리청 권고)

※ 비 고

1. 참고 사항

- 가. 모든 안전보호구는 인증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비규격품은 최상의 기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나. 석탄취급설비(하동, 삼척) 담당부서 및 건설사업소(요청시)는 기간내에 1컬레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한다.
- 다. 내빈용 안전모 및 절연안전화는 예비수량 외 별도로 구비 가능
- 라. 방진마스크 지급주기는 특급 및 1급은 1주, 2급은 3일, 1회용 및 기타는 1일 사용
- 마. 방독마스크 정화통은 사업소 별 필요한 가스종류에 맞게 구비할 것

2. 용어 정의

- 가. 전직원 : 근무형태에 상관없이 사업소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
- 나. 사무직 직원 : 생산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

※ 참고 사항

- 1. 모든 안전보호구는 인증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비규격품은 최상의 기능성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2. 안전보호구의 성능기준은 “보호구 안전인증 고시”(고용노동부)에 따른다.
- 3. 내빈용 안전모 및 절연안전화는 예비수량 외 별도로 구비가 가능하다.
- 4. 방독마스크 정화통은 사업소 별 필요한 가스종류에 맞게 구비해야 한다.

보건용 마스크를 방역용 마스크로 일원화

참고 사항 현행화

- 다. 현장 직원 : 교대 근무, 일근 감독, 설비 및 기타 기기를 감독 관리하는 직원, 생산 현장을 순회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직원(자재관리, 감사부서 포함)
- 라. 교대근무 직원 : 교대근무 형태로 근무하는 직원
- 마. 안전부서 : 안전업무 및 보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
- 바. 운영부서 : 발전운영 또는 환경화학 등 설비 및 부대시설의 건설, 운영 및 정비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
- 사. 사용장소 : 화학물질 취급 장소 또는 보일러실 등 공용 안전보호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장소

3. 보호구 성능기준 및 제품선정

- 가. 성능기준은 “보호구 안전인증 고시”(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35호)에 의거 결정함
- 나. 품목별 제품 선정은 노사 공동으로 함